

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,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‘한류산업’이란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2호의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·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이라고 정의함(안 제3조제2호).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·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12조).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지원하고,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14조).

II. 검토의견

안 제14조는 한류산업 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2항에서 “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지원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동 법안에서 지식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지식재산권은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를 총칭하는 용어인데, 저작권의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권리로 「저작권법」 제53조에 따라 “등록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저작권 등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, 이에 맞추어 “지식재산권의 출원”을 “지식재산권의 등록·출원”으로 자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.

그 밖에 체계 및 자구를 검토 결과 법률 용어의 일치 및 정비 등 경미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,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람.

III. 문화체육관광부 의견

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10조제2항에서 “협의체”는 자문위원회와 그 성격이 유사하고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

“협력체제 구축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,

안 제21조에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.

「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」	문화체육관광부 수정의견(안)
제10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국가는 한류정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·대학 등으로 <u>구성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21조(조세의 감면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10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국가는 한류정책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·대학 등과 <u>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</u>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u><삭 제></u>

(전문위원 이 화 실)